[별지 제48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 (앞쪽)

봉 함 엽 서

보내는 사람
시·도경찰청장(경찰서장)
주 소
□ □ □ - □ □ □

우체국
요금후납

받는 사람

과태료 부과 고지서 재중

귀하
□ □ □ - □ □ □

접 는 선

접 는 선

제 호

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(납부자용)

납부자: 주민(법인)번호: -*******

세입징수관	계좌번호

주 소:

귀하에 대하여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 금액			납부기한	~
위반사항	일시		위반내용	
	장소		적용법령	

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.

*** 납기 후 수납 불가**

시·도경찰청장
경 찰 서 장 직인

년 월 일 수납인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접는선

제 호

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(수납기관용)

경찰청

납부자: 주민(법인)번호: -*******

주 소:

세입징수관	계좌번호

과태료 금액		납부기한	~

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 은행(우체국) 지점

시·도경찰청장
경 찰 서 장 직인

수납인

접는선

< 안 내 말 씀 >

❖ 앞쪽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(수납) 대리점인 은행,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❖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납부기한까지 우리 경찰서(시·도경찰청)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❖ 이의제기 없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5/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/1000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아울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❖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